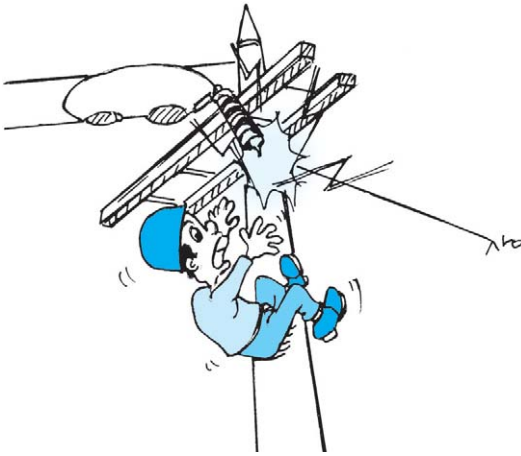


1. 재해발생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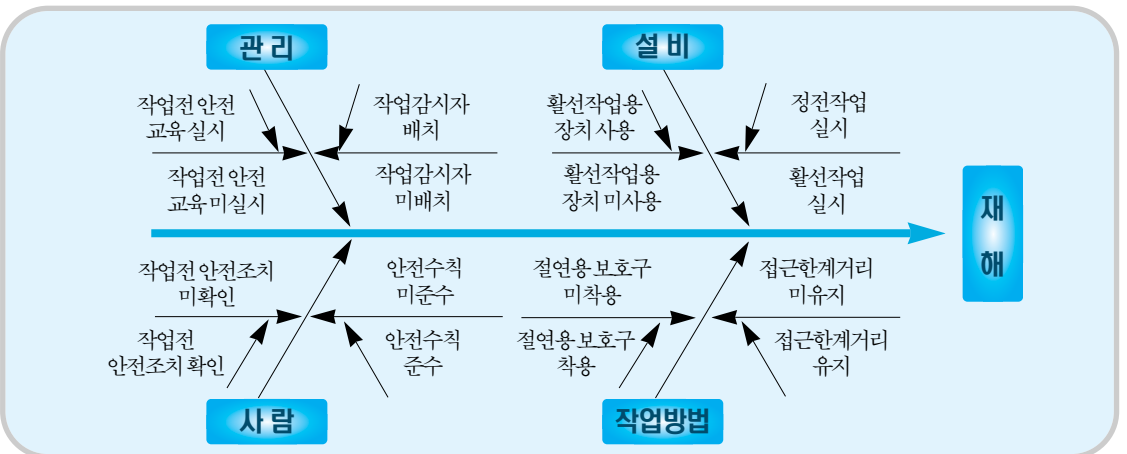
2003년 4월 ○일 12:00시경 충북충주시 ○○전기(주)의 전기공이 특별고압전신주에 승주하여 배전선로 지지물의 노후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애자에 명시된 제작년도 등을 관측, 기록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충전부에 접촉하여 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정전 작업 미실시
- 나. 특별고압 활선 근접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
- 다. 절연보호구 미착용

3. 재해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정전 작업 실시
 -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, 점검, 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시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 시행
- 나. 특별고압 활선 근접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
 - 정전작업이 곤란한 경우, 특별고압 활선 근접 작업시에는 활선작업용 차량, 핫스틱,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한 후에 작업
- 다. 특별안전교육 실시
 - 특별고압 활선 접근 등 위험 작업을 할 경우 작업의 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.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

1. 재해발생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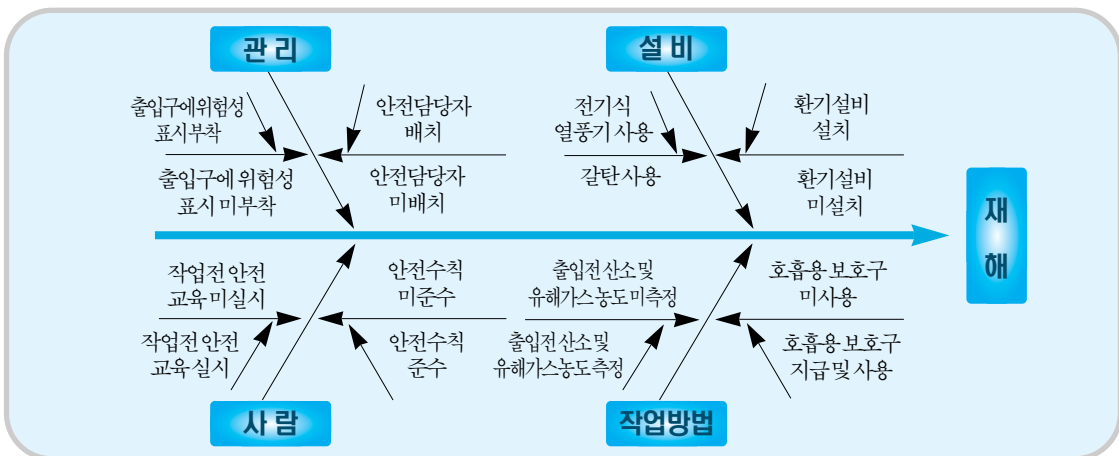
2003년 4월 ○일 18:00시경 전남 보성군 소재 ○○건설(주)휴양타운 조성공사에서 물탱크실 및 창고의 양생을 위하여 갈탄 보충작업을 하던 중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질식·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작업방법 불량
- 나. 질식위험 밀폐장소내 환기조치 미 실시
- 다.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미 착용
- 라. 산소결핍 및 질식위험지역 출입 미 통제

3. 재해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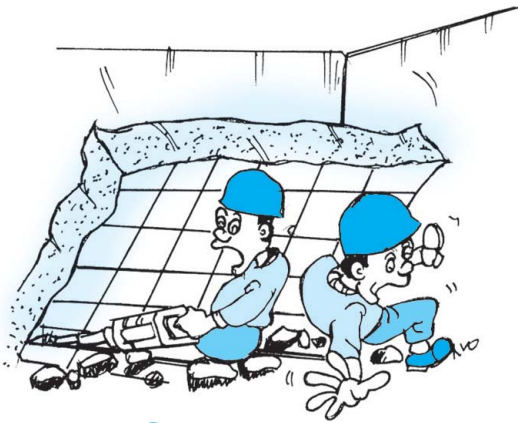
- 가. 작업방법 개선
 - 밀폐된 장소에서 양생시 일산화탄소,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전기식 열풍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개선
- 나. 질식위험 밀폐장소내 환기조치 실시
 - 배기구, 환풍기 등 급·배기 환기설비 설치에 의한 환기조치 실시 및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조치
- 다.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사용
 - 다량의 유해가스 발생지역에서 작업할 때는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토록 관리·감독
- 라. 산소결핍 및 질식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철저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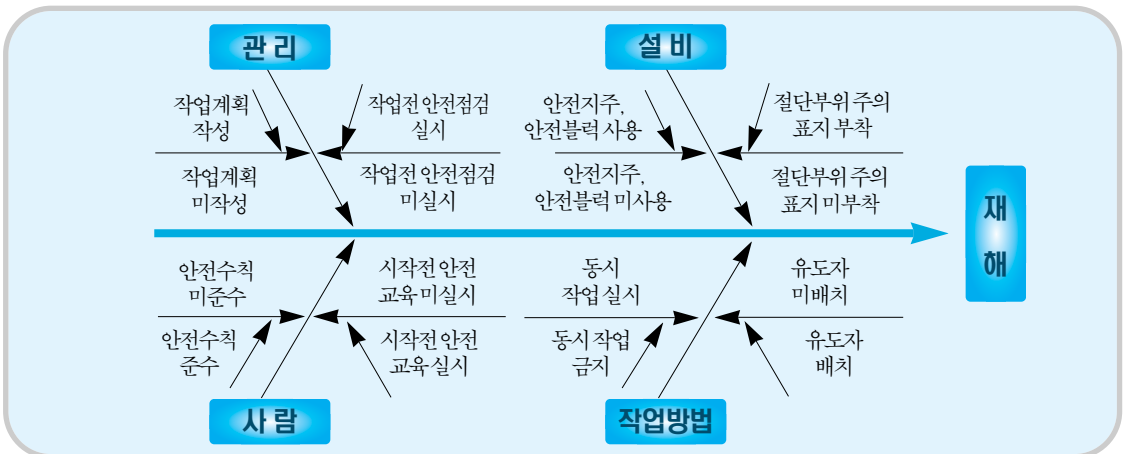
1. 재해발생 경위

2003년 4월 ○일 14:30분경 부산시 연제구 ○○엔지니어링(주)건물 신축현장에서 기초 콘크리트 파일 항타 완료 후 굴삭 및 파일 두부정리를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공 정리작업 중 일부 절단해 놓은 콘크리트 파일이 회전 중인 굴삭기 버킷에 부딪혀 도괴되어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.



가. 작업계획 미작성 및 작업방법 불량
나. 유도자 미배치

3. 재해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작업계획작성 및 작업방법 개선
안전한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동시작업 금지 등 작업방법을 개선토록 함.

나. 유도자 배치

파일도괴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근로자출입을 금해야 하나 부득이 작업시 유도자 배치

다. 안전교육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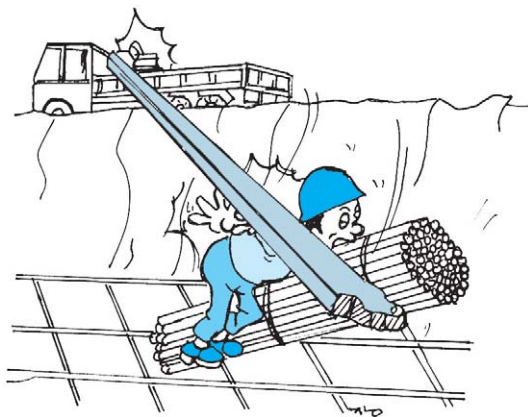
부득이 협소한 장소에서 동시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의 위험성을 교육함.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

1. 재해발생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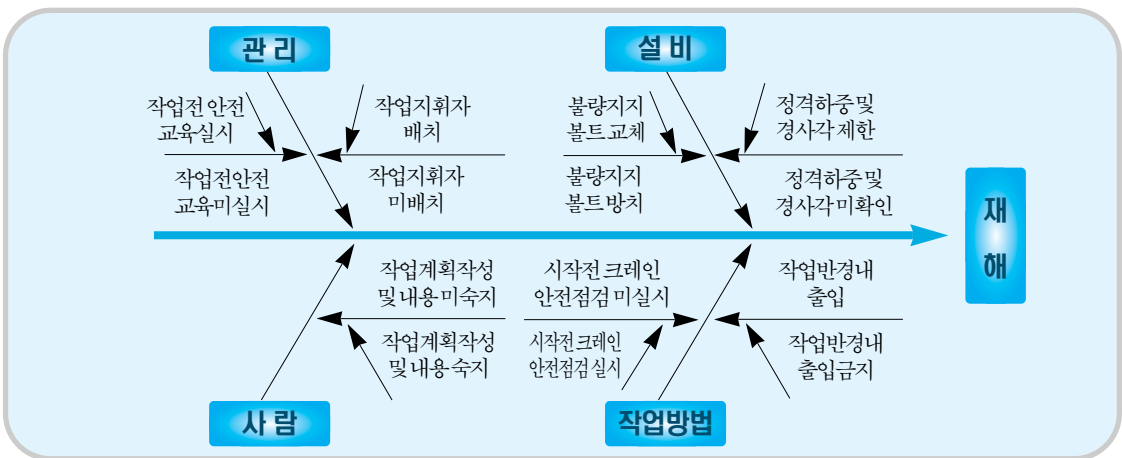
2003년 4월 ○일 16:20분경 경북구미시 ○○기업(주)고속도로 확장 공사장에서 배근용 가공철근을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역하다가 턴테이블 지지볼트가 절단되어 붐이 낙하되면서 피재자를 강타·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
- 나.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작성
- 다.정격하중미준수

3. 재해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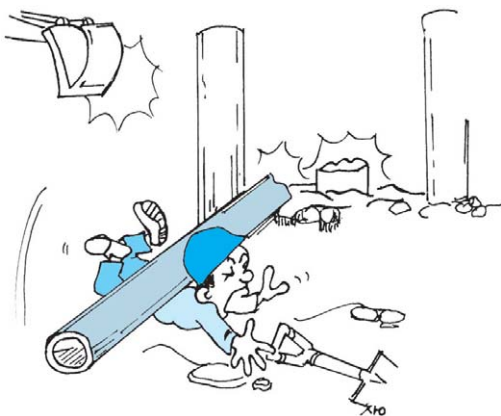
- 가.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
 - 당해 작업시작전 하역장치, 유압장치 및 턴테이블 등주요부위에 대한 점검(육안 및 정밀점검) 실시
- 나.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작성 철저
 -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작업자에게 작업계획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함.
- 다. 크레인의 정격하중 준수
 -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한 중량물 사용으로 크레인에 이상하중을 유발시켜 전도 등의 위험사항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격하중을 준수해야 함.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

1. 재해발생 경위

2003년 4월 ○일 13:05분경 경남 진주시○○리모텔링(주)화장실 개수공사중 화장실 바닥에서 해체한 벽체를 파쇄 및 운반작업 중 출입구 쪽 조적벽체가 붕괴되면서 하부에 작업하던 피재자가 깔려 사망하고 동료작업자는 부상을 입은 재해임.



- 가. 해체작업계획의 미작성
- 나. 작업방법 불량
- 다. 개인보호구 미착용

3. 재해요인도

4. 동증재해예방대책

가. 해체작업계획 작성철저
해체방법, 해체순서 등이 명기된 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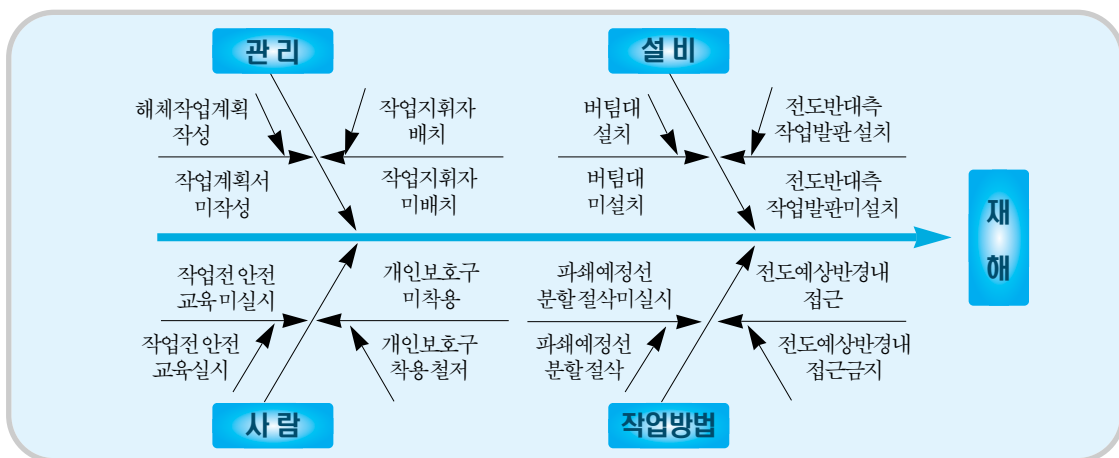
나. 작업방법 개선

- 전도해체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전도측으로 일정한 크기로 하부를 절삭하고 상부 앵커에 와이어로프 등을 걸어 전도하도록 하며, 전도예상반경내에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실시
-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한 파쇄해체공법 적용시 전도반대측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파쇄예정선에 따라 분할 절삭토록 함.
-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붕괴 위험이 있는 방향으로 버팀대 견고히 설치

다. 개인보호구(안전모) 착용 철저

5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



1. 재해발생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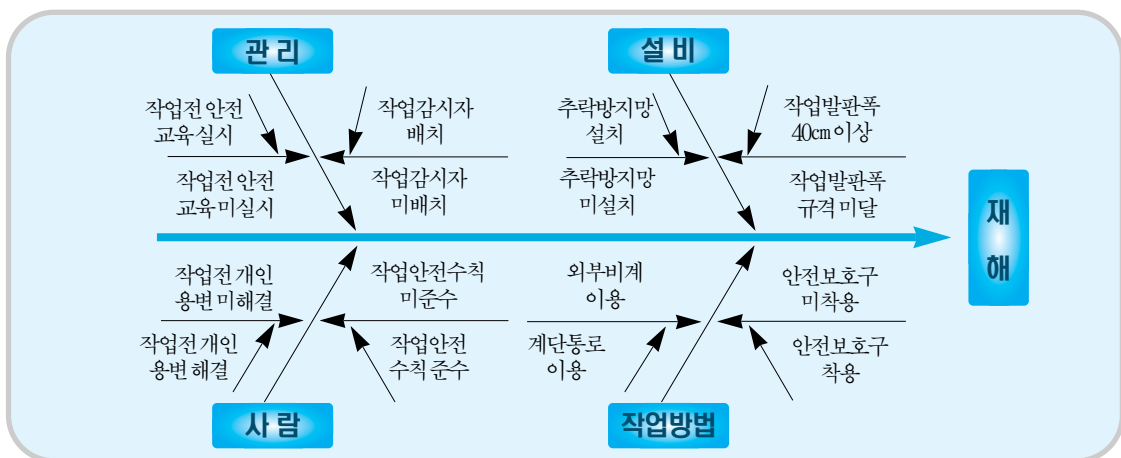
2003년 4월 ○일 10:50분경 서울시 동대문구 ○○ 건설(주)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외부비계를 통하여 인접한 건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.

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추락방지망 미설치
- 나. 불안정한 행동
- 다. 안전보호구 미착용

3. 재해요인도

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추락방지망 설치

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외부비계와 비계 사이 및 비계와 건물 사이에도 추락방지망을 빈틈없이 설치한 후 작업 실시.

나. 안전모 착용 철저

안전통로 이외에서 이동 또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·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함.

다. 작업발판 규격 준수

비계 등에서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이 되도록 규격을 준수하여 설치함.

5. 범위반사향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